

1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³⁹⁶⁾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
 - ① 증여자 요건
 - 1)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 2) 지분 요건 : 해당 기업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 (상장법인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3) 대표 요건 : 기업영위기간³⁹⁷⁾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② 수증자 요건
 - 1)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2) 재직 요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3)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총 자산가액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³⁹⁸⁾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³⁹⁹⁾ 단, 증여자의 경영기간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 한도 차등 적용

증여자(부모) 경영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한도액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396) 10-1장 기업상속공제 용어해설 참조 (단,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봄)

3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 합산

3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99) 주식 등을 증여받은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각 수증자의 증여세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날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2.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 연부연납은 허가일부터 15년간 허용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 가능
 - ①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가업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②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유의사항

- 증여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⁴⁰⁰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⁴⁰¹
 -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 중의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⁴⁰²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①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 ②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⁴⁰³ 신고 및 납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400) 추정대상세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40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402) 조세포탈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행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403) 추정대상세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금이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퇴직연금운용자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용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Q. 질문 2

창업주인 아버지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40년간 제조업을 경영해왔으며,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기간 동안 장남인 저와 공동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아들이 제가 단독 대표이사로登記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퇴임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장 직함을 유지하며 경영에 관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A. 세무사 답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은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반드시 기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⁴⁰⁴⁾

404) 서면상속증여2022-2304(2022.07.04)

Q. 질문 3

저는 법인 A, B, C 의 주주이며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인	주주구성
A법인	본인 50%, 타인 50%
B법인	본인 20%, 배우자(남편) 80%
C법인	본인 50%, 타인 50%

A법인의 본인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배우자(남편)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본인 지분 중 50%는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요건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장남과 차남이 부모로부터 법인별로 주식을 각각 증여받을 경우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 개인별로 각각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증여자 요건 및 수증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⁴⁰⁵⁾

Q. 질문 4

부산에서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 제조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기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기업요건 판단 시 개인사업자 영위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⁴⁰⁶⁾

405)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

406) 서면상속증여2015-2127(2015.11.16)

Q. 질문 5

저는 2021년 12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납부한 후, 2025년 3월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세무사 답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새롭게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⁴⁰⁷⁾

Q. 질문 6

저는 2017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아들에게 가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중 아들이 사망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현재는 며느리가 가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증자(子)가 증여자(父)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는지입니다.

A. 세무사 답변

증여자(父)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자(父)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⁴⁰⁸⁾

407) 서면상속증여2020-5502(2021.09.30), 서면상속증여 2021-2055(2021.04.29)

408) 서면법규재산2022-4436(2023.09.14)

-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증여일별 사후관리기간

구 분	2022.12.31. 개정 전	2023.01.01. 개정 이후 (23년이후 증여된 경우 적용)
사후관리기간	7년 이내 기업종사 요건 등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5년 이내 기업종사 요건 등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일정 요건 충족시* 개정 전 증여가 개시된 경우라도 5년 적용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199호] 제35조2항
기업유지의무 (대표이사직 유지의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납부유예 선택여부	-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로 선택 가능

- 기업상속 지원 중 중견기업 배제 규정

구 분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기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시 배제사유 없음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기업 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기업상속시 상속세 납부유예	기업상속공제 또는 상속세 납부유예 중 선택 적용 가능	기업상속공제만 적용 가능
증여세과세특례시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 중 선택 적용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만 적용 가능